

1. p17 (3) 공휴일 등에 따른 기한연장 - 오타정정

수정전	수정후
① 토요일 및 일요일	① 토요일 및 일요일
②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	②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
③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	③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

2. p55 (3) 사후귀속이익 - 오타정정

수정전	수정후
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·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 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(이하생략)	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·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 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(이하생략)

3. p61 (6) 1) 운임 등의 결정 - 시행령 개정(2026. 5. 8)

수정전	수정후
<p>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(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선박회사 등”이라 한다)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㉠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 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</p> <p>㉡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(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㉢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</p>	<p>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(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선박회사 등”이라 한다)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㉠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 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</p> <p>㉡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(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㉢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</p> <p>㉣ 전쟁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·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</p>

4. p63 (2)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- 오타정정

수정전	수정후
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·동질용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	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·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
5. p151 (3) 잠정조치 결정 - 오타정정

수정전	수정후
<u>1개월</u> 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<u>1개월</u> 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6. p159 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- 오타정정

수정전	수정후
<p>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</p> <p>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① 조사대상공급자</p> <p>②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</p>	<p>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</p> <p>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① 조사대상공급자</p> <p>②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</p>

7. p159 (3)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- 오타정정

수정전	수정후
<p>(3)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</p> <p>1)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</p> <p>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상기 (2)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규공급자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.</p> <p>...(중략)...</p> <p>2)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시행규칙 제17조 제3항</p> <p>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(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)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</p>	<p>(2) 조사대상자 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</p> <p>1)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</p> <p>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상기 (1)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규공급자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.</p> <p>...(중략)...</p> <p>(3)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시행규칙 제17조 제3항</p> <p>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(덤핑 및 실질적</p>

조속히 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는 해당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.	피해 등의 조사)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는 해당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.
--	--

8. p161 (1) 3) 잠정조치시 담보의 종류 - 오타정정

수정전	수정후
3) 잠정조치시 담보의 종류 [시행령 제66조 제4항] 상기 1)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회 (금전, 국채 또는 지방채,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, 납세보증보험증권,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.	3) 잠정조치시 담보의 종류 [시행령 제66조 제4항] 상기 1)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(금전, 국채 또는 지방채,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, 납세보증보험증권,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.

(이상)